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00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에 대한 지원한도 금액 조정(안 별표 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한도 금액을 현행 1억 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하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실질적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5. 6. ~ 5. 26.)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	500
------------------	-----

별표 2 제1호 비고 제2호 중 “주택”을 “가목의 기준은 주택”으로, “피해는 가목의 기준에 따르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재산상 피해는 라목의 기준에 따른다”를 “피해에 대해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비고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나목”을 “다목”으로 한다.

3. 심의위원회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나목의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제정TF	
연 락 처	(044) 203 - 5894